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235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조합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6.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48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는 2014. 12. 5. E에게 1,400만 원을 약정금리 연 29.9%, 대출기간 2019. 12. 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그에 따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은 2018. 12.경부터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F은행은 2019. 6. 1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40723호)을 제기하여 2020. 3. 18. 'E은 원고에게 13,322,477원 및 그 중 10,434,763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은 2015. 3. 22.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E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채권은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등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E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우선수익자 피고 보조참가인의 선의 여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5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와 별다른 연고관계가 없다.
-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E와 2015. 6. 30. 대출금액 8,500만 원, 가산금리 2.267%, 대출기간 2035. 6. 30.까지로 정하여 가계주택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 ③ 이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E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위 대출금액을 매매잔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E에게 대출한 금액과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수익권증서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④ E은 위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반적인 대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E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 ⑤ 그 밖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24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8.4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41분의 25.26

